

안전정책연구소 운영규정

제정 : 2016. 10. 27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 적) 이 규정은 안전정책개발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(사)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(이하 '안실련') 부설 안전정책연구소(이하 '연구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내용)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안전관련 불합리한 법제도 혁신 및 제도화
2. 안전정책 연구용역 및 정책개발
3. 각종 안전사고와 안전이슈 현장조사 활동
4. 기업과 협력한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
5.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
6. 안전현안문제 세미나, 토론회 운영
7. 안전정책 포럼 운영
8.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

제 2 장 조 직

제3조(기 구)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 : 1인
2. 부소장 : 5인 이내
3.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장

② 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연구소장) ① 연구소장은 안실련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공동대표가 임명한다.

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며, 운영위원장이 된다.

③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소부소장) ① 연구소부소장(이하 '부소장'이라 한다)은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안실련 공동대표가 임명한다.

② 부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연구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별로 1명의 분과위원장과 1명 이상의 간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③ 분과위원장과 간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) ① 연구소장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재난안전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.

제8조(행정업무) 연구소의 행정업무는 사무처에서 지원한다.

제 3 장 운 영 위 원 회

제9조(설치 및 구성) ① 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소장, 부소장, 분과위원장, 사무처 본부장 중 1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
제10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안전정책연구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정책방향과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
2. 규정에 관한 사항
3. 연구소장 추천 등 인사에 관한 사항
4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자 문 위 원

제12조(자문위원) 연구소 운영의 전문성과 자문을 위해 안전전문가나 실적이 뛰어난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3조(구성 및 운영) ①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. 자문위원은 연구소 위원 2명 이상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촉한다.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수 당

제14조(수당 등) ① 연구소 사업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연구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, 4촌 이내,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와의 정책연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 6 장 재 정

제15조(재 정)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
3.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
4.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

② 외부수탁 연구용역비의 5%는 일반관리비로 할 수 있다.

제16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안실련 회계 연도에 준한다.

제 7 장 보 고

제17조(보 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

제 8 장 보 칙

제18조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